



기안용지

건설부장 조항
장건설사항

호	415	기안처	계	획	과	시	장
번	720	기안과	이	주	응	결	계
관		서명	67.	7.	경제	일자	
시행일자		기안일					
보존년한							

보	부시	제2부	9	장			
수	주	도시	계획	주	장		
기	과	계	획	과	장		
관	계	가	보	계	획	계	

협	조	운영	총무	과	장	관리	과	장
경	수	유	신	조	가	안	참	모

제 목 : 도시계획수용변경 및 주유저상(노후·구거) 용도피

지

제 1 단

주 신 변 구 경 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인리동 및 주유저상
도시계획수용 및 노후·구거 용지에 대하여 한국전력주
회사로 부터 폐지 요청이 있어 소년검토한바

2. 본지역은 양인리 화력발전소 역세로써
도시계획수로, 노후 및 구거 용지가 용도가 상실되어
불용화 되었으며, 현재 화력발전소 확장 건설 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상과 같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수로 및 도로, 주거용지가 본지역의 토지이용에 지장 (전원 개발에 따른 화력발전소 확장 건설)을 초래하고 있어 별안과 같이 도시계획수령을 변경하고 도로및 주거용지를 용도폐지 하도록 합니다.

가. 도시계획수로는 건설부고시 제 320 호 (67.5.5)로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변경고시.

나. 도로및 주거용지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용도폐지 신청

제 2 안

고시안

고시제 71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71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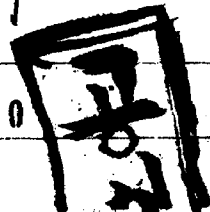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리용 및 선두용지에 도시계획수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수령계획 및 마포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총람에 포함한다.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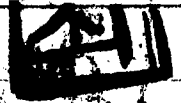
1967. 9. 20

서울특별시



변경증서

100



구분	용도	구분	면적	면적	면적	기	점	중	점	비	고
변경전	농지	2	12	2 ⁰⁰	540 ^M	40	40	118	118		
변경후	농지	2	12	8 ⁰⁰	250 ^M	74 ⁰⁰ 17	118	118	118	일부폐지	
변경전	농지	37	6 ⁰⁰	170 ^M	50	50	50	50			
변경후										폐지	
변경전	농지	3	40	6 ⁰⁰	140 ^M	50 ⁰⁰ 2	60	60			
변경후										폐지	

제 3 단

우 신 전 설 부 장 관.

1. 당시 관내의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는 건설부 고시 제 320 호 (67. 5. 5) 로 권한 위임 받은 사람에게 위계 별첨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함 나마.

2. 당시 관내 다음 도시 재산이 용도가 폐지 상충되었기 취득재산법 제 2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폐지 신청함 나마.

3. 재산의 표시.

1.120년

도로 198 평

가. 시군주별시 마포구 함정동 7543 평 간

가 동동 67 평 간 구거 245 평

543 평

마. 동구 ~~동~~ 망인리동 7542 평 간 도로

마. 동구 망인리동 5 평 간 도로, 134 평

전 부 지 권 도 2 부 및 고시문사본 1 부

제 7 안
주 신 마포구정장

1. 시마전설 416-2624 (67. 3. 22)

로기 상권임.

2. 키구 관내 ~~동~~ 함정동 및 망인리동
지에 도시계획이 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도시계획 변경 고시 하였으니 ~~이~~ 구경제시안 및 관할 동
사무소 제시 안이 제시 하여 관계인의 승인이 공하기
바람.

3. 동문 및 구거 부지는 용도예외 하 2차
전설부 장관에게 진달 하였음을 회내함.

전 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2 부.



소

제 5 안
우 신
서 주

공보실장

박삼과장

시보제지각리

별첨 고시문사본과 같이 고시하였기

홍보리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 고시문 1부

사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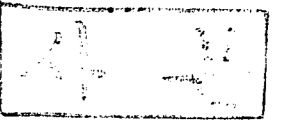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地積算定簿

縮尺 1/200

測量士 金 聖 烈
異動測量係圖筆 張代換

第 一 回	第 二 回	第 三 回	第 四 回	積算法	里 洞	地 番	算出地積	修正地積	原地地積	新舊地積	配賦數	正地積	從地	河橋	溝	地	結算價格	備 考	
44	45	46	3		龍心洞	124						134						1167	5.11
174																			
84																			



以特別市郡森町 邑面

地積算定簿

縮尺 1/200

測量士 委 聖烈
測量士 聖烈
測量士 聖烈

請取	又	算出	積算法	申請	地番	算出地積	補正地積	新舊地積	配賦點	從前	地積	備	注
第一	第二	第三	第四	第五	第六	第七	第八	第九	第十	第十一	第十二	第十三	第十四
157	158	157	3	初 次 測	7	472					472		175.11
(A diagonal line is drawn across the table from the bottom-left corner to the top-right corner.)													

구거 도로폐지허가신청서

1. 위치및장소 서울특별시 바 조 구 당인 동 66번지 (별지 도면이 붙여진 장소)
2. 목적및연장 별지 지적도면 표시
3. 폐도면적 구거 245평
하늘면적 도로 332평
4. 목적 국가 시책에 따른 양사의 전원 개발 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하계 발전소를 위외 장소에 건립하게 됨에 따라 이의 건설 부지내의 구거 및 도로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이를 폐지하여 원만한 공사 실시 국가 시책에 차질을 끼치지 않는 데 있음.
5. 사유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함 (이를 폐지하게 되어라도 인은 주민들에게는 하등의 지장이 없음 - 별지 도면 참조)

위와 같이 폐도코자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퇴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7년 3월 13일

주소 서울특별시 바 조 구 당인 동 66번지 호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 건설사무소
신청인 성명장직무대리고 공 영 ●

바 조 구 청 장 귀하

1067 3. 13	제출하는 곳	구	건설과
	갖추어야 할 서류	① 소유권등기부 등본 ② 원지 동의회 ③ 실측도면 ④ 시세인납증명서	
	수수료	없음	
	어떤지 사의가	결승 → 적인 → 원지조사 → 적정 → 지장 → 구청장 → 진행	

